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6호 2020. 7. 10(금)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582호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583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8
- 남원시 조례 제1584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남원시 조례 제1585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29
- 남원시 조례 제1586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37
- 남원시 조례 제1587호 남원시 출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남원시 조례 제1588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남원시 조례 제1589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남원시 조례 제1590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남원시 조례 제1591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 56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57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77
- 남원시 규칙 제658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81
- 남원시 규칙 제659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1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9-12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14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2 호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남원시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 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보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 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남원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 소방, 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공익신고 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3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악인재 발굴·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립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 근무하며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기공연”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수시공연”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2장 국악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기구) ① 국악단에는 공연기획실, 예술단(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연수부를 둔다.

②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며 상임단원은 53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국악단에는 단장 소속으로 부단장 1명과 예술총감독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국악단 운영 및 발전에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마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 및 동편제 국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 농악, 고전기악, 고전무용의 교육·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3.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대내외 국악공연
4. 국악단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공연기획실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며, 예술단의 지도위원(악장, 지휘자, 안무자)이 겸직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탁월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

② 비상임단원은 각 대학 국악 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각 분야의 기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

③ 단원은 가급적 2개 이상의 기능보유자를 우선 임명한다.

④ 단원모집에 따른 단원의 자격 및 심사규정과 심사위원의 자격은 「남원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 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습 및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정) ① 국악단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예술총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정은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평정결과 평정등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하위 직책 또는 호봉으로 강등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실기평정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연) ① 국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 ③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상설야외공연을 하며 필요시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국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입장료 및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 ③ 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기획실·예술단·연수부

제14조(공연기획실) ① 공연기획실에는 공연기획실장을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공연기획실장은 단원의 근무관리 및 공연기획, 운영, 의상, 소품, 악기 등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예술단) ① 예술단에는 지도위원을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지도위원은 창악부에는 악장, 기악부에는 지휘자, 무용부에는 안무자가 된다.

제16조(연수부) ① 연수부에 연수부장과 연수강사를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연수부장은 연수부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수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연수부에서 국악을 배우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악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취소·중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단 운영이 중지된 경우 : 전액
3.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당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4장 어린이국악단

제18조(어린이국악단 설치) 관내 지역의 국악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국악단에 남원시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어린이국악단은 관리교사 1명, 지도교사 2명, 어린이국악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교사는 소속 단원을 관리하고 공연 기획 등 공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교사는 어린이국악단원의 실기지도와 공연활동교육을 담당하며, 기량이 우수한 시립국악단원 중에서 단장이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전문예술인을 비상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어린이국악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단장이 선발한다. 단,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단원의 해촉)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린이국악단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와 어린이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어린이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연습 및 공연)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정기 및 수시 연수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② 어린이국악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국악단 상설 공연 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의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교사와 지도교사에게 어린이국악단원 지도 및 관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국악단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국악단 연습에 대한 보상금 및 필요경비
2. 공연에 대한 공연수당 및 필요경비
3. 그 밖에 어린이국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5장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국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3. 국악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악진흥과 보급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
5. 시 공무원 중 국악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국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여 위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8조(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시설의 사용) ① 국악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남원시립국악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4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제1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을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자활연수원”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7조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자금의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각각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금”을 “자금”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활기업”을 각각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 담당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기업</u>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u>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u>에 대한 사업자급 대여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 	<p><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기업</u>”이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u>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u>”(이하 “<u>자활사업단</u>”이라 한다)이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p>제3조(사업의 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u>----- ----- -- 2. ----- <u>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u> ---- 3. <u>영 제37조</u>----- -----

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 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5. -----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8. ----- 자활사업단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 자활사업단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

1. 법 제2조제2호 -----

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3. 4. (생략)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6.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② (생략)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자활기

2. -----

자활사업단

3. 4. (현행과 같음)

5.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 자활사업단 -----

1. 2. (현행과 같음)

3.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자활

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제5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용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채 처리비용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

사업단 -----

-----.

제8조(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삭 제>

금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

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및 특

용작물 재배자금

라. 상가·점포 운영 등 사업

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

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

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

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시장진

입형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

----- 자활사업단 -----

-----, 자활

사업단-----

-----.

② 사업자금을 대어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어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어 받은 경우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② 자금-----
----- 자활사업단-----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

-----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어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 자
활사업단 -----

-----.

② -----

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③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
----- 기금업무 담당으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5 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활동실적 확인) 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접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다만, 위탁기

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확인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이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실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위탁기관장 확인 (신청자격 및 활동실적 확인)	위탁기관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직인]

붙임 : 세부활동내역 1부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6 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남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
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0-0호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원시장 0 0 0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9조 관련)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 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제9조 관련)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일	
No.				
상담종류 (V표시)	◦ 국세상담 () ◦ 지방세상담 () ◦ 지방세불복 ()	상담방법 (V표시)	◦ 방문상담 () ◦ 팩스상담 () ◦ 전화상담 () ◦ 메일상담 ()		
신청인	읍면동				
	성명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남원시 마을세무사				(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7 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부 또는 모, 형제자매가 다

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하거나 지원기간 내 진출한 이력이 있는 경 우

제5조제1항제3호 중 “셋째아 이상”을 “셋째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 : 2,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5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
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
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
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8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폭원이”를 “너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퍼센트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84조를 삭제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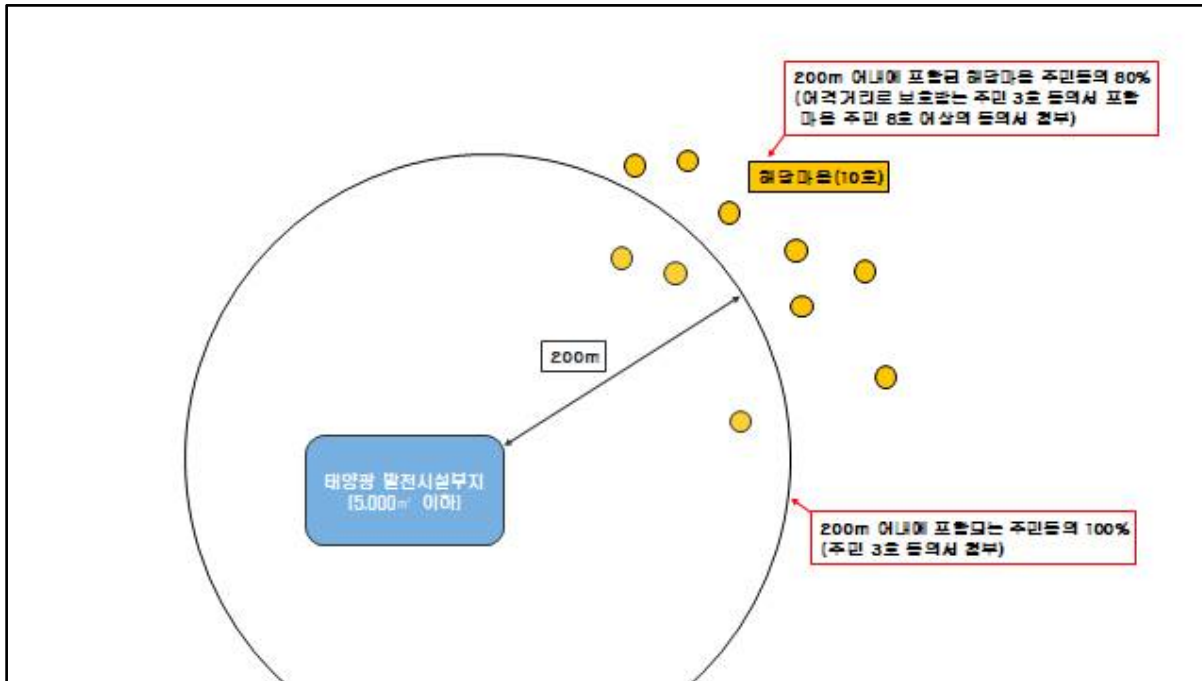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9]

1.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제20조의2제4항제3호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받는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을 포함한 해당마을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예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1. ---- <u>너비가</u> ----- ----- --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u>건</u>	2.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
미터이며, 5,000제곱미터 이상
은 500미터

3. ~ 5. (생략)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

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
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
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
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
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 동
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 이
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
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
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
은 경우

<삭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89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로 한다.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대한 감면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90 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의원은 <u>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u>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u></p> <p>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u>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p>	<p>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u>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u> ----- ----- -----.</p> <p><삭 제></p> <p><삭 제></p> <p>⑤ ----- ----- -----</p>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장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 의원의 외
부장의등을 -----.

⑥ ~ ⑧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591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시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면·동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7.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원시 평생교육 소관부서의 국·과장

나.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장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

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② 협회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회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회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남원시 요천로 1283 및 남원시 광한북로 54에 둔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8. 평생교육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운영 및 활동가 양성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문해교육이나 공개강좌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 사유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수강료 징수 후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기간 계속적·정기적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및 정치성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7. 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주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사용료 반환 및 배상)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 후 사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모집되어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6. 교육 과정의 회차당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28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

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책정하되,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
3. 전문 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
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제29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수요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검사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단체·개인 등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 선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미 교부 또는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SNS 활동가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평생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는 평생교육기관 시설 내에서

수강생이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기 준(1인/1월)	요금(원)	비 고
기술·취미· 어학·문화 등 일반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6,000	○ 수강 접수 시 교육 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선납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000	
	주당 8시간 이상	10,000	
일반 과정 (고급·심화반 개설시), 전문과정 및 특화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12,000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6,000	
	주당 8시간 이상	20,000	

2. 수강료 면제 기준 (1인 1과목에 한함)

구 분	감면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9.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1인 1과목) 100% 면제

【별표 2】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폐강이 결정되었거나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개강일 이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2.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제한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4. 사용일 이후 사용자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포기한 경우	사용 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별표 3】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대관시설	수용인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회의실)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2. 컴퓨터실, 조리실은 10명 이상 관련 수업 시에만 대여 가능 3. 동아리실 대관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에 한함. 4. 부대시설 이용료는 기본사용료에 포함. ※ 대관시설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여를 하지 않음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다목적강연장 (301호)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조리실 (203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컴퓨터실 (207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댄스실 (302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강의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동아리실 (101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동아리실 (102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2. 사용료 면제 기준

구 분	감면 금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별표 4】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제27조제2항 관련)

강사구분	자 격 기 준
기술교육 강사	○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취미·어학· 문화·체육 등 강사	○ 교육법령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

수강과목				신청자명	
수강생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역	_____ 읍/면/동			성 별	남() 여()
수 강 료	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 무통장입금 ()		
환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면제사유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유공자 (), 세 자녀 이상 부모 (), 한부모 가정 ()		증빙서류	신분증, 확인증, 등본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동의

동의(필수)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수강취소과목			사용시설물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자택/사무실)	
반환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반환금액	원			
수강취소사유	1. 취업·이사 2. 건강상의 문제 3. 단순변심 4. 기타			
시설사용취소사유	1. 행사(교육, 활동) 취소 2. 단순변심 3. 기타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기 납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용료	원			

사용허가 조건

1.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및 허가권자 지침(지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허가 통지서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 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 후 반드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 657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p> <p>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 ⑧ (생략)</p>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p> <p>자가 ----- .</p> <p><삭 제></p> <p>④ -----</p> <p>-----</p> <p>-----</p> <p>----- 외부강의등을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2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① -----</p> <p>-----</p> <p>----- 별지 제6호 서식----- .</p>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7호서식 -----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9호서식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
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 658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단원 정원 등)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직책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의 모집 및 자격)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단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며 단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공연기획실 단원은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한다.
2. 연수강사, 예술단원, 관리교사는 실기(85퍼센트)와 면접(15퍼센트)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단장 및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악단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전형위원은 국악의 권위자 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 전형위원은 실기와 면접을 겸할 수 없으며 실기전형위원 및 면접전형위원은 부문별 각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채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임명) 단원은 임명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 및 수당)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는 별표 3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관리수당, 공연수당, 원거리수당 등은 별표 4를, 지도수당은 별표 5를,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단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3에 따라 획정하되, 경력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합산한다.

②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비상임 단원 수당) ①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7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순회, 특별공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 「남원시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례금 지급) ① 국악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 심사평가, 역량강화 교육 등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별표 8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할 경우 사례금 지급기준액 하한금액의 20퍼센트를 한도액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정의 구분) 단원의 근무성적 및 실기 향상도를 평가 심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표 9의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

1. 근무평정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평정
2. 실기평정은 단원의 실기능력에 대하여 평정
3. 종합평정은 근무평정 및 실기평정을 종합하고 가감점하여 평정

제12조(단원 평정) ① 단원의 평정은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제외한 단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공연기획실 소속단원, 연수강사, 악장, 지휘자, 안무자, 관리교사 :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시행
2. 예술단원 : 실기 70퍼센트, 근무성적 30퍼센트

② 단원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단원
2. 입단 12개월 미만의 단원
3. 법정 출산휴가자와 공상 및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병가중인 단원
4. 평정기간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5. 임신, 천재지변 등 애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평정을 수행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단, 평정에서 제외된 단원은 직전 평가를 반영한다.
6. 그 밖에 국악단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단원은 실기평정을 면제하고 근무평정만으로 평정한다.

제13조(근무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정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평정자 50퍼센트 확인자 50퍼센트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한다.

② 가·감점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③ 단장이 부시장인 경우 평정자는 부단장이 되고, 확인자는 국악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조정자는 부시장이 된다. 단, 평정자는 부서별 책임자의 평정

참고자료를 토대로 평정할 수 있다.

④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단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단장이 되며, 확인자는 국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조정자는 부시장이 된다. 단, 평정자는 부서별 책임자의 평정 참고자료를 토대로 평정할 수 있다.

⑤ 조정자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점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한다.

⑥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기평정) ① 실기평정은 국악계의 유능한 외래 인사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시행한다.

② 실기평정은 별도의 기준을 세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5조(종합평정) ①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의 결과를 합하고 가감점 평정하여 종합평정을 시행한다.

②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함께 받을 경우 근무평정은 30퍼센트, 실기평정은 70퍼센트를 반영하여 종합 평정한다.

③ 종합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6조(평정시기)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홀수년도 12월 20일 까지 시행한다. 다만, 국악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단장이 부시장인 경우 : 예술총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 산출된 평가 방식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을 받은 단원은 경고 처분하되 경고의 시효는 10년으로 하고, 평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평정점수가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단원은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
2. 누적 2회 경고 처분을 받은 단원은 1회 호봉승급 보류
3. 누적 경고 횟수가 3회 이상인 단원은 차 하위 직책 또는 호봉으로 강등
4. 누적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는 재임명할 수 없음 단, 해임 시기는 2개월 이내 유예 가능

②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근속승진 임용) ① 근속연수 8년 이상인 준단원과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정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인 단원은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한 인원만큼 근속승진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한다.

③ 근속승진한 자가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한다.

제19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 징수는 임시대표소를 지정하여 입장권을 판매

- 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판매자에게 총 대표금액의 20퍼센트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입장료 금액은 공연마다 따로 정한다.
- ④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입장료 발행매수의 20퍼센트 이내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⑤ 유료공연 시 20명 이상 단체 입장객의 경우 입장료 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⑥ 입장료를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출연료 징수) ① 출연료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연수부 구성) ① 연수부에는 판소리(소리북 포함), 기악, 무용, 농악과정을 둔다.

② 연수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으로 선발한다.

③ 연수강사는 국악단원 중에서 선정·임명할 수 있으며 겸임할 수 있다.

④ 연수부에는 별도의 객원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객원강사는 별표 2의 연수강사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객원강사는 시장이 선정 임명하며 별표 7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연수부 운영) ① 연수부는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까지 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수부의 수업은 주당 5일,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수강료) ①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의식 고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자(입상 후 1년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외국인
4. 65세 이상의 어르신
5. 그 밖에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사적출연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외 단원의 사적출연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월 3회

이내로 가능하다. 단, 동일 행사에 3명 이상의 단원이 동시 출연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연 3일전까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강의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외 단원의 외부강의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 관내 학교의 출강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강 5일전까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외부강의(겸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남원시립국악단 복무 규정」을 따른다.

제27조(표창)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국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였을 경우
4. 국악단의 권위나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지참 5회 이상,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4회 이상일 경우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일 경우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단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악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업무 담당국장, 과장, 국악단의 부단장이 되며 간사는 국악업무 담당이 된다.

④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별표 13의 징계양정기준
2. 별표 1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3. 별표 15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4. 별표 16의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제32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 직 : 12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악단 상임단원의 직책 및 정원(제2조 관련)

직 책		정 원	비 고	
계		53		
단 장	단 장	1		
	부 단 장	1	공연기획실장 겸임가능	
	예술총감독	1	지도위원 겸임가능	
공연기획실	공연기획실장	1		
	기획·연출	1		
	연구·홍보	1		
	스 텃	2	음향·조명·무대감독	
예술단	지도위원	악 장	1	창악부
		지휘자	1	기악부
		안무자	1	무용부
	수 석	6		
	차 석	6		
	정단원	20		
	준단원	5		
	연수부	연수부장	1	연수강사 중 지정
연수강사		3		
어린이국악단	관리교사	1		

【별표 2】

국악단 상임단원의 자격(제3조 및 제21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단 장	단 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예술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한 사람 2. 법인으로 등록된 국악관련 단체의 장을 3년 이상 역임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4. 그 밖에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 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국·공립 및 등록된 예술단체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 연 기 획 실	기 획	• 해당분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연 출	• 국공립예술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예술단체 연출 경력 3년 이상인 자
	연 구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관련대학, 공공기관에서 국악에 관한 연구 2년 이상 경력자
	홍 보	• 관련분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스텝 (음향·조명·무대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의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등록된 예술단체 동일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관련분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예 술 단	지도위원 (악장,지휘자, 안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예술단체 및 등록된 예술단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예술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등록된 예술단체 동일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 장관상 이상 수상자
연 수 부	연수강사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연수강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2.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자 3.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등록된 예술단체 동일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별표 3】

급여지급기준 및 초임호봉 확정기준(제6조 및 제7조 관련)

구 분	지급기준
국악단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5급 5호봉 상당액
부단장, 예술총감독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3호봉 상당액
공연기획실장, 연수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2호봉 상당액
악장, 지휘자, 안무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2호봉 상당액
수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1호봉 상당액
차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정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준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9급 1호봉 상당액
스텝, 기획·연출, 연구·홍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 1호봉 상당액
연수강사(1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연수강사(2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9급 1호봉 상당액
관리교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별표 4】

수당지급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관리수당	공연수당 (1회당)	비고
국악단장	200,000	100,000	100,000			
부단장, 예술총감독	150,000	80,000	70,000	소품, 의상, 악보, 악기 자동차 관리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야간, 상설공연 40,000원 • 휴일, 국외공연 50,000원 	
공연기획실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연수부장 관리교사	140,000	70,000	근무년수 5년 미만	원거리수당		
수 석	130,000		50,000원			
차 석	120,000		5년 이상	국악의성지 (운봉) 근무자 100,000원		
정단원, 준단원	90,000		60,000원			
연수강사	130,000	50,000				

- ※ 1. 공연기획실 직원(스텝, 기획·연출, 연구·홍보)은 예술단 해당직급 수당지급기준 준용
 2. 국악의성지(운봉)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원거리 수당 차감지급(일할계산)
 3. 휴일 공연 후 대체 휴무 시 공연수당 40퍼센트 감액지급

【별표 5】

지도수당 지급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지도수당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	7	4
지도수당	남원시립국악단원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	5	3

【별표 6】

단원경력 환산율표(제7조 관련)

경 력 구 분	환산율
1.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에서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또는 해외에서 동일분야의 연구또는 교육경력	100%
3.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일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100%
4. 군복무 경력	100%
5. 동일분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3호봉
6. 남원시립국악단에서 비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50%

【별표 7】

비상임단원, 객원강사 수당지급표(제8조 및 제21조 관련)

근무기간	비상임단원	객원강사
6개월 미만	1일 60,000원	1일 80,000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일 70,000원	1일 90,000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일 80,000원	1일 100,000원
18개월 이상	1일 90,000원	

【별표 8】

사 례 금 지 급 기 준(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사례명	구 분	단위	지급액	비고	
대본료	장막극	작품	2,000~8,000		
	단막극	작품	1,000~5,000		
	각색	작품	1,000~3,000		
	구성	작품	1,000		
작곡·작창료	공통	작품 1곡	2,000~8,000 200~1,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	공통	작품 1곡	1,000~5,000 100~500		
연출료	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종합극	작품	2,000~10,000		
안무료	무용, 창극 관현악극	작품	1,000~5,000		
		작품	500~3,000		
조연출, 조안무	공통	작품	500~3,000		
원작사용료	공통	작품	500~5,000		
지휘료	공통	1회당	500~2,000		
해설·사회료		1회당	100~1,000	신설	
오선 악보	사보	총보	50매이내 50매초과	면당 10 면당 5	
	채보		행당	행당 2	
외부직원 출(협)연료, 반주료		1회당	특급 1,500~5,000 A급 800~2,000 B급 500~1,000 C급 300~800 D급 200~500 E급 50~200	주연급	
심사·교육 등	교육·강의 (단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교통비 별도지급	
	심사평가 전형·위원 등	반일 전일	200~300 300~500	교통비 별도지급	
번역료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1일간	50~300		
	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	1회당	100~250		
기 타	장치·무대 디자인		1,000~5,000		
	의상 디자인		1,000~4,000		
	소품 디자인		500~2,000		
	음향·영상 디자인		1,000~3,000		
	조명디자인		1,000~4,000		

○ 외부직원 출(협)연료 기준

- 특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A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B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 C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 D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하 경력자
- E급 : 군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9】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제11조 관련)

평정구분	평 정 항 목		배 점	평 정 방 법	비 고		
실기평정	실기능력	창의성	18점	70점	실기평정위원이 피 평정자의 실연을 통해 실기능력 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	예술단원	
		표현력	18점				
		해석력	17점				
		난이도	17점				
근무평정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10점	70점	각 직무능력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	공연기획실 연수부 기 타	
		고객지향	10점				
		업무지식	10점				
		정보수집관리	10점				
		창 의 성	10점				
		실 행 력	10점				
		윤리의식	10점				
	직무수행태도	적극성	6점	24점	연습량, 참여도 동료애, 인간관계 준비성, 완결성 조직에 대한 애착	공 통	
		협조성	6점				
		성실성	6점				
소속감		6점					
기 타	국악단 기여도		6점	6점	공연출연회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평정	공 통	
	가·감점	가 점	10점				공 통
		감 점	10점				
종합평정							

※ 평정배점 비율

◇ 예술단원

실기평정결과 70%, 근무평정결과 30%(직무수행태도 24%, 국악단 기여도 6%) 가·감점 ±10

◇ 공연기획실, 연수부 및 기타

근무평정결과 100%(직무수행능력 70%, 직무수행태도 24%, 국악단 기여도 6%) 가·감점 ±10

【별표 10】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표(제13조제2항 관련)

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가점항목	경력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팸플렛 제출 필요)	2
	수상실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전통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감점항목	출연 정지		-5점
	감봉		-3점
	견책		-2점
	무단 결근		-1점
	무단 조퇴		-0.5점
	무단 외출		-0.5점
	지각		-0.5점
	경고 주의		-0.5점
	기 타		-0.5점

【별표 11】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제19조 관련)

대 상	범 위	비고
1. 일반공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2.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국악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든 입장객	

【별표 12】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제20조 관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 내	관 외	
독창,독무,독주	25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반주자 포함 5명 이내
10명 미만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10명 이상 ~ 20명 이하	700,000원 이상	1,400,000원 이상	
20명 이상 ~ 30명 이하	1,0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30명 이상	1,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상	

- ※ 1.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산정
 2.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 제공
 3.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

【별표 13】

징 계 양 정 기 준(제3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단에서 기획된 공연작품에 대 한 공연거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 봉
다. 사적출연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 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 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청렴의무 위반 별표 14와 같음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성폭력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 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6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31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 경징계 : 견책, 감봉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별표 1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31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경·중 징 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 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 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 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 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 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예) 감봉1월 → 감봉2월, 감봉3월 → 정직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 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6】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제31조 관련)

유형 \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지참	-	-	주 의	경 고-	견 책
무단외출	-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무단조퇴	-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무단결근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정 직
복수유형 위반시 (지각,무단외출· 조퇴·결근시)	경 고	견 책	감 봉	정 직	해 임

※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남원시립국악단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창의와 성실로서 전통국악의 보존과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국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절대
 않겠습니다.
- 2. 시장의 승인 없이 국악단 이외의 사적출연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단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 하
 지 않겠습니다.
- 4. 시장이 요구하는 공연 및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단원으로서 의무를 충실
 히 하겠습니다.
- 5.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동 복무규정의 관련사항
 위반 시 제 규정에 의거 처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①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실기평정 대상자)근무성적 평정표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 . ~ . . .)

부 서	직 책	호 봉	성 명

근무실적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평정자	확인자
1	적극성	6	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협조성	6	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	성실성	6	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	소속감	6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	기여도	6	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					

근무평정 가점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팸플렛 제출 필요)	2		
2	수 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근무평정 감점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실기평정 제외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 . ~ . . .)

부 서	직 책	호 봉	성 명

□ 직무수행능력 평가(7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점수	
				평정자	확인자
1	자기계발	10	* 업무능력 향상 및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고객지향	10	* 업무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업무지식	10	*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이해·숙련·활용한다.		
4	정보수집 관 리	10	*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한다.		
5	창 의 성	10	* 담당업무 수행시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실 행 력	10	* 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7	윤리의식	10	* 기본적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적 의식을 발휘한다.		
총 점					

□ 근무실적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평정자	확인자
1	적극성	6	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협조성	6	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	성실성	6	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	소속감	6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	기여도	6	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					

□ 근무평정 가점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팸플렛 제출 필요)	2		
2	수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 「남원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사용한다.

근무평정 감점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평 정 대 장

분야	직 위	성 명	최 초 임 용 일	근무평정 (100)	가 점	감 점	총 점	조정	종합평 점

【별지 제4호서식】

실 기 평 정 대 장

분야	직 위	성 명	최 초 임 용 일	실기평정 (70)	근무평정 (30)	가 점	감 점	총 점	조정	종합평 점

【별지 제5호서식】

사적출연 승인신청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신청내용 -

구분	기간 또는 일시	주최	공연장소	내용	근무상황
사적출연					

※ 첨부 :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소속 :

직책 :

성명 :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겸직) 허가신청서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주민 등록번호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체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횟수 및 시간	• 월 강의횟수 : • 월 강의횟수 :	
강의 요청기관		겸직(강의) 시 직위		
겸직(강의)시 받는보수	• 1회 강의 시 : • 월 보수 :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겸직(외부강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 659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및 제8조의2”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운영규모 등) ①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이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조(재정보증) 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p>	<p>제2조(재정보증) ① ----- -----</p>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

가. 무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근로소득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나.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근로소득 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1명

2. (생략)

② (생략)

제6조(중복융자 금지)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금상환 완료 전까지 조례에서 정한 자활기금에 대해 중복융자를 금지한다.

----- 제8조의2-----

-----.

<삭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남원시 고시 제2020-12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7월 10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20,907	-	720,907	100.00	
도 시 지 역		3,068	-	3,068	0.4	
녹지 지역	소 계	3,068	-	3,068	0.4	
	생산녹지지역	1,950	-	1,950	0.2	
	자연녹지지역	1,118	-	1,118	0.2	
도 시 외 지 역		717,839	-	717,839	99.6	
관리 지역	소 계	364,200	-	364,200	50.5	
	보전관리지역	8,271	-	8,271	1.1	
	생산관리지역	8,575	-	8,575	1.2	
	계획관리지역	347,354	-	347,354	48.2	
농림지역		353,639	-	353,639	49.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 합 형	소	계	-	345,713	-	345,713	
				특	정	형	운봉읍 용산리 717-8번지 일원	41,112	-	41,112
				관	광	휴양형	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	304,601	-	304,601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다-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16	4,498	39,999	3	528	5,665	3	386	6,061	10	3,584	28,273
중로	7	1,426	18,810	-	-	-	3	386	6,061	4	1,040	12,749
소로	9	3,072	21,189	3	528	5,665	-	-	-	6	2,544	15,52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구간내)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41	15	국지 도로	157	중로2-105 용산리 771-1도	소로3-605 용산리 377-5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2	342	18	국지 도로	98	중로3-343 용산리 265-1	중로3-341 용산리 265-1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5.	
기정	중로	2	105	15	보조 간선	1,164 (131)	중로2-101 동천리 419-3	허브밸리입구 용산리 771-1	일반 도로	운봉 초교	1977. 12.30.	
기정	중로	3	341	12	국지 도로	82	중로3-342 용산리 718-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 도로	323	중로2-341 용산리 682-3구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3	12	국지 도로	115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4	12	국지 도로	520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구역계 용산리 446-1목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소로	1	601	10	특수 도로	81	중로3-342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소로	1	602	10	국지 도로	72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소로3-605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1	603	10	국지 도로	375	중로3-344 용산리 446-1목	소로3-609 용산리 763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5	6	국지 도로	1,628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6	6	국지 도로	187	소로3-605 용산리 산8임	구역경계 용산리 산10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7	4	특수 도로	156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8	4	특수 도로	123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9	6	특수 도로	310	소로2-601 용산리 721-10도	소로1-603 용산리 717-12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10	6	국지 도로	140	소로2-601 용산리 757-2도	소로1-603 용산리 757-2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2,562	-	32,562		
기정	341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18답 일원	3,034	-	3,034	2007.01.05.	
기정	342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6-1차 일원	4,053	-	4,053	2007.01.05.	
기정	343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8-6차 일원	10,263	-	10,263	2007.01.05.	
기정	344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24-4차 일원	15,212	-	15,212	2007.01.05.	

☑ 방재시설(변경없음)

○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우수지	저류시설	운봉읍 용산리 714-1답 일원	2,200	-	2,200	2013. 12. 24.	

☑ 공간시설 :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8,898	-	18,898		
기정	341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7-5답 일원	692	-	692	2007.01.05.	
기정	346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1,449	-	1,449	2007.01.05.	
기정	347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3,858	-	3,858	2009.07.14.	
기정	348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2,957	-	2,957	2009.07.14.	
기정	349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산6-2임 일원	4,361	-	4,361	2009.07.14.	
기정	350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4-8공 일원	2,082	-	2,082	2013.12.24.	
기정	352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4-8공 일원	1,034	-	1,034	2013.12.24.	
기정	35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71-2차 일원	1,807	-	1,807	2013.12.24.	
기정	35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68-6차 일원	658	-	658	2013.12.24.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0,942	-	210,942		
소계				37,822	-	37,822		
A	A-1	A-1	용산리 266-14	15,427	-	15,427	허브복합도피아관	
	A-2	A-2	용산리 268-12	15,431	-	15,431	아로마테라피관	
	A-3	A-3	용산리 446-3	4,437	-	4,437	관리동	
	A-4	A-4	용산리 423-10	1,613	-	1,613	미니동물원	
	A-5	A-5	용산리 423-10	914	-	914	라이더관리소	
소계				110,346	-	110,346		
D	D-1	D-1	용산리 446-20	3,366	-	3,366	녹지	
	D-4	D-2	용산리 393	1,273	-	1,273	녹지	
	D-5	D-3	용산리 423-1	1,533	-	1,533	녹지	
	D-6	D-4	용산리 266-2	3,752	-	3,752	녹지	
	D-7	D-5	용산리 442-4	25,237	-	25,237	녹지(토피어리원)	
	D-8	D-6	용산리 442-3	16,497	-	16,497	녹지(미로원)	
	D-9	D-7	용산리 442-3	12,145	-	12,145	녹지(향기원)	
	D-10	D-8	용산리 산10	17,198	-	17,198	녹지(철쭉원)	
	D-11	D-9	용산리 714-1	8,921	-	8,921	허브정원1	
	D-12	D-10	용산리 717-1	14,263	-	14,263	허브정원2	
	D-13	D-11	용산리 721-4	3,692	-	3,692	허브재배체험장	
	D-14	D-12	용산리 772	2,469	-	2,778	녹지	
	소계				1,003	-	1,003	
	E	E-1	E-1	용산리 266-13	641	-	641	화장실1
E-3		E-2	용산리 442-6	362	-	362	화장실2	
소계				16,494	-	16,494		
F	F-1	F-1	용산리 717-3	3,928	-	3,928	향기놀이터	
	F-2	F-2	용산리 721-4	3,667	-	3,667	야외공연장2	
	F-3	F-3	용산리 724-1	8,899	-	8,899	허브체험장2	
소계				45,277	-	45,277		
G	G-1	G-1	용산리 442	11,083	-	11,083	중앙광장	
	G-2	G-2	용산리 산6-2	3,286	-	3,286	허브체험장1	
	G-3	G-3	용산리 442-3	2,705	-	2,705	야외공연장1	
	G-4	G-4	용산리 442-3	1,439	-	1,439	야영장	
	G-5	G-5	용산리 442-5	1,800	-	1,800	풍속문화전시관	
	G-6	G-6	용산리 442-5	1,500	-	1,500	전망대	
	G-7	G-7	용산리 442-4	23,464	-	23,464	에코어드벤처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D-2 ~ D-12 E-2	· 가구번호 변경	·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구번호 재부여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허브 복합 토포 아관	용산리 266-14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 라목, 마목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 라목, 마목
				불 허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A-2 아로마 테라 피관	용산리 266-12	용 도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지상 4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3 관리동	용산리 446-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A-4 미니 동물원	용산리 423-10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5 라이더 관리소	용산리 423-10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1 화장실1	용산리 266-1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2 화장실2	용산리 442-6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향기 놀이터	용산리 717-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F-2 야외 공연장2	용산리 721-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F-3 허브 체험장2	용산리 724-1	용 도	허 용	기 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변 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1 중앙 광장	용산리 44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2 허브 체험장1	용산리 산6-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3 야외 공연장1	용산리 442-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4 야영장	용산리 442-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5 풍속 문화 전시관	용산리 442-5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6 전망대	용산리 산10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7 에코 어드 벤처	용산리 442-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
-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
-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8m이내, 세로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
-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 형태로 한정하고,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

다-2.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교통시설 :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합계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소로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660	중로3-344 용산리742-6	중로3-344 용산리742-2	일반 도로		2007. 1. 5.	
기정	소로	2	602	8	특수 도로	164	중로3-342 용산리756-2	소로2-601 용산리756-2	보행자 전용		2007. 1. 5.	
기정	소로	2	603	8	특수 도로	144	중로3-342 용산리265-1	소로2-601 용산리761-3	보행자 전용		2007. 1. 5.	
기정	소로	3	603	6	특수 도로	273	중로3-344 용산리742-4	소로2-601 용산리721-10	보행자 전용		2007. 1. 5.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047	-	3,047		
기정	342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3공 일원	571	-	571	2007.01.05.	
기정	34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5공 일원	554	-	554	2007.01.05.	
기정	34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7공 일원	906	-	906	2007.01.05.	
기정	345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2공 일원	1,016	-	1,016	2007.01.05.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772	-	28,772	
B	B-1	B-1	용산리 714-15장	3,166	-	3,166	
	B-2	B-2	용산리 714-10장	2,329	-	2,329	
	B-3	B-3	용산리 714-22답	1,387	-	1,387	
	B-4	B-4	용산리 717-29장	4,647	-	4,647	
	B-5	B-5	용산리 717-8장	4,565	-	4,565	
	B-6	B-6	용산리 717-11장	4,164	-	4,164	
	B-7	B-7	용산리 721-7장	4,330	-	4,330	
	B-8	B-8	용산리 721-8장	4,184	-	4,184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 B-8 허브 제품 가공 단지	용산리 일원	용도	허용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중 목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40%이하
		변경		· 60%이하	
		용적률	기정	· 100%이하	
			변경	· 150%이하	
		높이	기정	· 지상 2층(변경없음)	

※ B-1~B-8 까지의 허용용도 중 공장은 다음과 같다

1.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
2. 허브생산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
3. 부대시설 :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

※ 목욕장 :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로 한정